

(별지 제7호 서식)

지적재산권(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수출·수입) 통관보류 통지서

귀 하

아래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2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었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통관보류물품이 상표권 침해물품인 경우, 보류요청인은 보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류요청인이 통보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조상품을 제외하고는 통관의 보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자가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한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요청서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통관보류 요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통관허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물품을 수출입신고시 장치된 장소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번호		신고 년월일	
수출(입)자명		권리의 종류	
통관보류물품	품명 (HS No)		
	상표 또는 제목		
	수량	신고가격	

년 월 일

세 관 장